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-80호

고용창출(고용촉진)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

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고용조정 제한 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고용창출(고용촉진)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문을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24. 3. 22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

1. 건 명 : 고용창출(고용촉진)장려금 회수 결정 통보 공시송달 공고
2. 근 거 :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 (대표자명)	사업장관리번호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불능사유	주 소
			지원금액	회수결정금액	회수사유		
명○컴퍼니주식회사 (인 ○ 원)	423-88-0****-0	고용창출(고용촉진)장려금 회수예정 알림 및 의견제출 안내	3.600,000원	3.600,000원	고용조정 제한 의무기간 미준수	이사감	경기 화성시 금곡로 278-10

4. 공고기간: 2024. 3. 22. ~ 2023. 4. 5.(15일간)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수원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팀 박희옥(Tel.031-231-7912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